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

제정일: 2009. 2. 3

개정일: 2020. 10. 28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광운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대상 및 범위)**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내전 기관,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에 적용한다.
- **제3조(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)** ①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'보안관리심의위원회'를 둔다.
 -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5인이상~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20.10.28.>

- ③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
- 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<개정 2020.10.28.>
-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
- 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산학협력단 보안관리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20.10.28.>
- 제4조(보안관리심의위원회 기능)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· 결정한다.
 - 1.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
 - 2.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경에 대한 적정성
 - 3.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
 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5조(보안관리심의위원회 회의)** ① 보안관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수 있다.
- 제6조(분류기준)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 - 1. 보안과제 :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,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
 - 2. 일반과제 :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
 - 2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- 3.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, 미래의 기술적·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- 4. 국방·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
 - 5. 관계중앙행정기관(이하 '중앙행정기관'이라 한다) 또는 전문기관(이하 '전문기관'이라 한다)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, 공고하는 기술의 연구

- 6. '산업기술유출방지법'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4가지 산업기술 추가적 요건
 - 가.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업화 가 가능한 기술
 - 나.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 - 다. 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
 - 라.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
-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제7조(분류절차)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[별지 제1호서식]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보안관리심의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소관 중앙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보 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보안등급 변경) ① 연구책임자가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보안위 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, 소관 중앙행정기 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변경된 보안등급 및 변경 내역, 변경사유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)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
- 제10조(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) 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 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,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(10월중)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)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[별지 제2호서식]의 보안서약서를 산학 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2조(연구대외비자료에 대한 보안조치)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'연구대외비'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,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 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)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 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하며 기록 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외국인 참여 제한)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외국기업,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. 단, 불가피

-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2.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 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.
- 4.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 록 하여야 하며,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.
- 제15조(보안사고의 보고)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, 연구 대외비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,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,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·장소, 사고자 인적사항, 사고내용 등을 즉시 보안관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보안관리 책임 및 조치)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위반 시 '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' 및 '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'에 따라 책임을 진다.
- 제17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제 규정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

[별지 제1호서식]

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

번 호	보안등급 분류 기준	점검 결과		
		예	아니오	
1	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			
2	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			
3	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, 미래의 기술적·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			
4	국방·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			
5	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, 공고하는 기술 연구			
6	'산업기술유출방지법'에서 정한 다음 4가지 산업기술 추가 요건			
6-1	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업화가 가능한 기술			
6-2	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			
6-3	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			
6-4	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			
1	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			
_	보안 등급은 '보안과제'와 '일반과제'로 2대 분류합니다.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'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' 및 광운대학교 '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 관리 규정'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.			

최종 점검 결과 :	□ 보안과제	□ 일반과제
※ 상기 점검 결과, 한 가지	항목이라도 "예"가 있	을 경우, 보안과제로 분류

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,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연구책임자: (소속학과) (성명) (인)

20 년 월 일

광운대학교 총장(산학협력단장) 귀하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 귀하 [별지 제2호서식]

보 안 서 약 서

성 명

생년월일

상기 본인은 (연구과제명 :)의 연구과제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- 2.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.
- 3.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, 그 시점에 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.

20 년 월 일

서약인 (인)

광운대학교 총장(산학협력단장) 귀하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 귀하